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93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3385호	김준혁의원	2025.9.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3465호	정성국의원	2025.10.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4044호	김민전의원	2025.11.10.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2.24.)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 3. 10.)는 이상 3건

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 신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